

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

지정 업체	업체명	사업자등록번호					
	주소						

물자의 소유 자 또는 업체의 대표자	성명	생년월일					
	주소						

물자의 품목	규격 또는 구조	단위	수량	임무고지 내용			임무기간
				임무의 내용	사용기관 (인수기관)	인도·인수 장소	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

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하고 그 임무를 고지합니다.

년 월 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산림청장
시·도지사



※ 이 고지서를 받은 물자의 소유자(점유자) 또는 업체의 장은 고지서에 기재된 임무를 해당 기간 내에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.

..... 자르는 선 (간 인)

제 호				
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수령증				
다음과 같이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.				
수령인	성명	(서명)	생년월일	
	주소		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과의 관계	
	수령일시		수령 장소	
※ 이 수령증은 반드시 반송해야 합니다.				
※ 문의사항이나 그 밖의 참고사항이 있을 때에는 아래 빈칸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				